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4

□ 제안이유

- 소방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과 법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주방설비, 보일러등 조문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최근 개정 공포한 소방법에 따라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 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10배 미만에서 20배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9조제1항),
- 화재위험 경고 발령중 불의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위임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함.
- 조례로 정하여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과 법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주방설비, 보일러등 10개 조문을 폐지하여 종전의 제6장 26개 조문을 제5장 16개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 소방법 제1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소방법 제14조(소방의 날 제정·운영)
- 소방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단서, 제3항(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기준, 위치, 구조, 설비)
- 소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주택용,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시설의 기준)
- 소방법 제27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 소방법 제119조(과태료 부과)

□ 첨부

-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법 제14조의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의 단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의 기준과 이에 대한 위치·구조·설비,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하여거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등의 저장취급기준과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2조(시간당 용량 3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열발생장치)시간당 용량 3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열발생장치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실내에 설치하고 창 및 출입구 등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로의 주위에 유효한 공간을 보유하는 등 방화상 지장이 없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난로의 사용제한)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주점, 지하의 위생접객업소, 소극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난로(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 한한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고정시켜 쉽게 이동 또는 전도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난로의 연소기(본체)와 연료통은 상호 5미터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연료통이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등) ①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등 안전책임자(이하 “안전책임자”라 한다)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2. 그라인더 등 불티가 생기는 작업
3. 토치램프 등에 의한 가열작업
4. 리베트작업

②안전책임자는 가연성의 증기, 가스, 분진 또는 폭발성의 분진을 현저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환기, 분진의 제거, 화기의 제한, 소화용구의 준비, 작업후의 점검 그 밖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흡연 등) ①다음 각호의 장소로서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또는 불의 사용, 그 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한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 또는 객석

- 2. “영”별표 1(특수장소)에 계기한 판매시설의 매장 또는 전시부분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
- 4. 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하는 것 이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인명피해의 위험이 많은 장소

②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당해 장소에 흡연, 불의 사용 또는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을 제지하여야 한다.

제6조(완구용 연화) ①장난감용의 폭죽·불꽃 등(이하 “연화”라 한다)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장난감용 연화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용기에 넣거나 방염 처리된 것으로 피복 되어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의 날 행사) ①소방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소방행정에 관련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2. 불조심 강조의 달 설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있어서 11월 9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하고 행사의 성격상 기일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날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8조(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취급 및 시설기준)①소방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취급상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은 충수압 시험을 받은 옥외탱크, 옥내 탱크 또는 지하탱크 저장시설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험물 저장소에는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택용 유류저장소”라는 명칭과 아래 부분에 품명 및 최대저장량을 기재한 표지판 및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이라고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되 표지판의 크기는 각각 가로 0.4미터 이상 세로 0.2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위험물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5. 압력탱크와의 저장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 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지하탱크의 개폐밸브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은 금속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9. 저장탱크의 가까운 곳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옥내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세대별 난방용 옥내탱크는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1. 탱크전용실은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기둥 등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탱크 상호간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탱크전용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 및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단서의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탱크 전용실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4. 탱크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 전용실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탱크 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세대별 난방용 위험물저장소는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위험물 저장은 옥내탱크에 한하고 거실을 제외한 당해 세대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의 최대 저장량은 1,000리터 이하로 하고 탱크 전용실은 다른 용도의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과 지붕으로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3. 탱크전용실의 출입구는 거실과 직접 통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고 방화문 및 0.2미터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저장 탱크는 지하에 설치된 탱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200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시설에 적합할 때에는 당해 탱크를 탱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하저장 탱크는 그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3. 지하저장 탱크를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지하저장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탱크와 탱크실의 내벽과의 사이는 0.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탱크실 내부에는 건조된 모래로 채워야 한다.

제9조(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설비 및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2항 내지 제10항과 같다.

②농예용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에 한한다.

③위험물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 저장소에는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 저장소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50조(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소에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 소화기를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이 조에서 “탱크”라 한다)는 압력탱크가 아니어야 한다.
4.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충수시험(물 이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우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지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으로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외면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6. 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통기관의 위쪽 끝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러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가는 눈의 구리로 된 인화방지망을 씌워야 한다.
 - 다. 통기관의 윗쪽 끝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의 높이어야 한다.
 7.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화재예방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유호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배관은 강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속성의 것으로 설치하되 외면에는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 ⑤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소는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48조(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나.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공지를 두되, 공지의 너비는 지정수량의 5배미

만인 경우에는 0.5미터이상, 지정수량의 5배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69조(옥내저장소 건축물의 구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옥외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 설치장소 및 보유공지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227조(옥외 저장소의 설치장소), 제228조(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구조는 이 조 제8조제2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⑧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 안전거리, 보유공지, 방유제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48조, 제176조, 제190조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⑨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탱크의 위치, 매설배관, 탱크와 탱크실이 벽 및 탱크 상호간의 거리 등은 제8조제4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이 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5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대상은 공사장, 수출입 화물의 하역장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2.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로 한다.
3. 옥외저장소에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소방시설기준규칙 별표 16의 운반용기와 수납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저장시설 주위에는 3미터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또는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 주위에는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50조(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규정한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소화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③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저장 취급시설의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량위험물취급소”라는 표지와 위험물의 품명과 최대수량 및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일어나는 설비는 온도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물을 가압 또는 취급에 따라 압력이 상승하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인화성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열매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금속관 그밖의 내열성을 가진 관을 사용하고 그 배관 외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온도, 압력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의 변질 또는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12. 가연성의 액체, 증기, 가스가 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작은 가루가 떠돌아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이어야 하고 불티가 생기는 기계기구나 공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 중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접촉 또는 혼합으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과 위험물 이외의 물품은 상호 근접하여 뒤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 또는 혼합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험물을 용기에 담거나 옮겨 쌓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기술기준규칙 별표16에 계기한 운반용기와 수납방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위험물을 담은 용기가 겹쳐서 저장할 경우에는 높이 3미터(제4류 위험물중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4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할 때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골고루 상승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18. 위험물을 옮겨 쌓는 작업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19. 분무, 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 20.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1. 염색 또는 세탁 작업시에는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유는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22.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할 때에는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쳐흐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3.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비치할 것.

②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장소의 주위에는 폭 2미터 이상(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방화구조의 벽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마주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닥 주위에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고, 당해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가장 낮은 부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가대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대를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높이 6미터를 초과하여 용기를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1. 벽, 기둥, 바닥 및 천정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2.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가장 낮은 부분에 저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가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대를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증기 또는 작은 가루의 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당해 증기 등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금속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쉽게 파손 또는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면에는 쉽게 녹이 슬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인화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통기관의 선단에 구리로 된 가는망을 씌워 인화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탱크의 배관에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액체위험물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는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옥외에 설치한 것으로 탱크 밑판을 바닥에 접하여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지하탱크의 기술상 기준은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지반면 밑에 콘크리트로 만든 탱크 실에 설치하거나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프라이마, 몰탈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등에 의해 상부에서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탱크는 당해 탱크에 직접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덮어야 한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배관은 당해 탱크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탱크 주의에는 당해 탱크에서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특수가연물(영 별표4에서 정한 특수가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및 최대수량, 화기취급금지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특수가연물을 쌓아두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하마다 높이 9미터이하로 구분하여 쌓고, 상호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마다 구분해서 쌓을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화재라고 오인할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등의 신고) 다음 각호에 게기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서장에게 신고(구술 또는 전화)하여야 한다.

1. 약제 및 화학제품 등을 사용하여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 또는 화재를 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연화(완구용 연화는 제외한다)의 취급 및 사용
3. 수도의 단수 또는 감수

제14조(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명령)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조 및 8조의 사항은 1차에 한하여 시정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벌 칙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 조례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중전의 화재예방조례 제22조(화재위험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의 규정은 소방법령이 정하는 관련 규정의 폐지 시행일인 1999. 8월 6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근거 법령

제1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보일러·난로·화로·건조설비·전기시설 그 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소방의 날 제정·운영) ①시·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제정과 그 날에 있어서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8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 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조소등의 시설기준등) 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험물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④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량위험물의 취급) ①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에 저장·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제15조제1항 단서·제16조제3항·제18조제1항 후단·제19조제3항(제35조 및 제65조의 7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3조 제1항 후단·제57조·제62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자체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
3.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4.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5.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제13조, 제15조제2항 단서·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

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⑦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이를 준용한다.